

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7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2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소비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고,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,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’ 완화 필요
- 2025. 4. 중소벤처기업부와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 완료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변경(안제16조제1항)
- 나. 골목형 상점가 기준 관련한 중기부의 표준 제시(안)은 시내권은 30→15개 이상으로 ‘인구감소지역’은 30→10개 이상이었으나,
- 다. 상반기 중 중기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안산시 시내권은 15개 이상으로, 대부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준한 10개로 협의.

[변경 전]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점포

[변경 후] 2천제곱미터 이내 15개 점포(대부분은 10개)

3. 참고사항

가. 제정(개정, 폐지)조례안 : **【붙임 1】**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**【붙임 2】**

다. 관계법령발췌서 : **【붙임 3】**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**【붙임 4】**

마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5. 5. 28. ~ 2025. 6. 17. (20일간)

바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**【붙임 5】**

2) 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6】**

【붙임 1】

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(市長)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을 충족하여 밀집되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 대부동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골목형상점가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소상공인지원과
입	소상공인지원과장	김 정 삼
안	상권활성화팀장	이 종 민
자	담 당 자 (연락처)	김 명 균 (481-2695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 ① 시장(市長)은 영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일정 구역에 대해 직권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6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 ① 시장(市長)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을 충족하여 밀집되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 대부동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골목형상점가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